

의안번호	2204975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 계 번호	24G486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조세특례 신설·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R&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적용기한 연장,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, 세수는 2025년 1,312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1조 5,926억원(연평균 2조 3,18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 제6조	-	-1,477	-2,594	-4,431	-5,908	-14,770	-3,603
R&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조	-	-14,200	-15,094	-15,986	-134	-45,414	-11,354
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2조의4	-	-40	-40	-40	-	-120	-40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안 제16조의2	-	-317	-317	-317	-	-951	-317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 안 제16조의3	-	-8	-8	-8	-	-24	-8
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안 제16조의4	-	-0	-0	-0	-	-0	0
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안 제19조제1항	-	-117	-134	-153	-	-404	-135
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안 제19조제2항	-	-52	-54	-57	-	-162	-54
투자세액공제 적용률 상향, 적용기한 연장 등 안 제24조	-	-8,481	-8,905	-9,297	-1,871	-28,554	-7,139
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안 제29조의6제1항	-	-	-	-	-37	-37	-37
수도권 내로 공장이전 등 안 제63조	-	41	41	41	41	164	41
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안 제86조의3제1항	-	-146	-146	-146	-146	-585	-146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안 제91조의18	-100	-100	-100	-100	-100	-500	-100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안 제91조의20제1항	-	-14	-	-	-	-14	-14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결혼세액공제 신설 안 제92조 신설	-827	-827	-827	-	-	-2,481	-827
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안 제96조의3	-	-545	-	-	-	-545	-545
공공매입대주택 건설용 토지 안 제97조의9제1항	-11	-11	-11	-	-	-32	-11
근로장려금 소득상한, 산정 안 제100조의3제1항, 제100조의5제1항	-773	-763	-753	-743	-733	-3,765	-753
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안 제104조의10	-498	-6,303	-6,303	-6,303	-6,303	-25,710	-5,142
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안 제104조의11	-	-112	-112	-112	-	-336	-112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안 제104조의24	-	-10	-20	-30	-39	-98	-25
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안 제104조의26	-	-1	-1	-1	-	-3	-1
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 안 제106의11, 제108의3	81	324	324	324	324	1,378	275
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 제107조의2	-11	-5	-	-	-	-16	-8
친환경차 개발소비세 감면한도 안 제109조	833	1,122	1,138	1,154	1,170	5,417	1,083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안 제118조의2	-6	-6	-6	-	-	-17	-6
중복배제 안 제127조	-	277	277	277	277	1,108	277
합 계	-1,312	-31,771	-33,645	-35,928	-13,459	-115,926	23,18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	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	
2	안 제10조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R&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적용기한 연장, 국가전략기술에 방산, AI산업 추가	
3	안 제10조의2 (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)	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	
4	안 제12조의4 (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)	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	
5	안 제16조의2 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)	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연장	
6	안 제16조의3 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)	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연장	
7	안 제16조의4 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)	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	
8	안 제19조제1항 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	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	
9	안 제19조제2항 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	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	
11	안 제24조 (통합투자세액공제)	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,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방산, AI산업 추가	
12	안 제29조의6제1항 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	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요건 완화 및 소득세 감면 연장	
13	안 제58조제1항 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	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	
14	안 제63조 (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수도권 내로 공장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제외 및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요건 합리화	
15	안 제63조의2 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)	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요건 합리화	
16	안 제71조의2 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	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	
17	안 제74조 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)	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허용	
18	안 제86조의3제1항 (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)	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	
19	안 제87조	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)	상 확대	
20	안 제91조의18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	
21	안 제91조의20 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	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	
22	안 제91조의22 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)	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정요건 완화	
23	안 제91조의23 (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)	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	
24	안 제92조 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)	결혼세액공제 신설	
25	안 제96조의3제1항 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	
26	안 제97조의3 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)	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	
27	안 제97조의9제1항 (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)	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	
28	안 제98조의9 (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	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	
29	안 제99조의10 (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)	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	
30	안 제99조의14 (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	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	
31	안 제100조의3제1항 (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) 안 제100조의5제1항 (근로장려금의 산정)	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및 그에 따른 지급금액 조정	
32	안 제104조의10 (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)	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재설계	
33	안 제104조의11 (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)	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	
34	안 제104조의24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)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	
35	안 제104조의26 (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)	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	
36	안 제104조의34 (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	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	
37	안 제106조의7	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(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)	산세 보완	
38	안 제106조의11, 제108조의3 (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)	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	
39	안 제107조의2 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	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	
40	안 제109조 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	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조정	
41	안 제118조의2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	
42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	
43	안 127조(중복지원의 배제)	창업중소기업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	○	
2	안 제10조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	국가전략기술에 방산, AI산업 추가	×	추계 곤란
3	안 제10조의2 (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)	×	추계 곤란
4	안 제12조의4 (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)	×	추계 곤란
5	안 제16조의2제1항 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)	○	
6	안 제16조의3 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)	○	
7	안 제16조의4 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8	안 제19조 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	○	
9	안 제19조제2항 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	○	
11	안 제24조 (통합투자세액공제)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,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	○	
	국가전략기술에 방산, AI산업 추가	x	추계 곤란
12	안 제29조의6제1항 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	○	
13	안 제58조제1항 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	x	추계 곤란
14	안 제63조 (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	
15	안 제63조의2 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)	×	추계 곤란
16	안 제71조의2 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	×	추계 곤란
17	안 제74조	×	추계 곤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)		
18	안 제86조의3제1항 (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)	○	
19	안 제87조 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)	x	추계 곤란
20	안 제91조의18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21	안 제91조의20 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	○	
22	안 제91조의22 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)	x	추계 곤란
23	안 제91조의23 (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)	x	추계 곤란
24	안 제92조 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5	안 제96조의3제1항 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6	안 제97조의3 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)	×	추계 곤란
27	안 제97조의9 (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 특례)	○	
28	안 제98조의9 (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	×	추계 곤란
29	안 제99조의10 (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)	×	추계 곤란
30	안 제99조의14 (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	×	추계 곤란
31	안 제100조의3제1항 (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)	○	
32	안 제104조의10 (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)	×	추계 곤란
33	안 제104조의11 (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)	○	
34	안 제104조의24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	○	
35	안 제104조의26 (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)	○	
36	안 제104조의34 (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	×	추계 곤란
37	안 제106조의7 (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)	×	추계 곤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38	안 제106조의11, 제108조의3 (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)	○	
39	안 제107조의2 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	○	
40	안 제109조 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	○	
41	안 제118조의2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	○	
42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x	추계 곤란
43	안 127조(중복지원의 배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 추계 내역

가.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6조)

-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축소
 - (일반) 5년간 50% → 25%, (청년·생계형) 5년간 100% → 75%
- 고용증대 추가감면 확대
 - 상시근로자 증가율 $\times$ 50% → 100%
-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(2024.12.31. → 2027.12.31.)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청년·생계형 및 벤처기업 감면 비중은 2022년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청년/생계형 및 벤처기업의 세액감면 조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의 지역별 청년·생계형 및 벤처기업의 비중을 적용하여 현행과 개정안의 감면율 차이를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- 창업 후 5년간 감면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배분하여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1,477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조 4,770억원 감소
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6조	-	-1,477	-2,594	-4,431	-5,908	-14,770

나. R&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조)

-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-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-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3~5년간 R&D 세액공제율이 점감하는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R&D 세액공제는 NABO 명목 지식생산물투자(2024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-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시 일반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제
-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시 점감구조의 도입에 대한 세수효과는 향후 중견기업의 기술별 R&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전망치에 통계청의 2022년 기준 「기업통계등록부」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1조 4,200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4조 5,414억원 감소
- 2029년은 R&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

R&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						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조	-	-14,200	-15,094	-15,986	-134	-45,414

다.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2조의4)

-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
 - (현행) 10% → (개정안) 5%
-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 -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향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은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연평균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
- 최근 5년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에 공제율 축소비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동 제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적은 80억원 수준으로, 공제율이 축소(10% → 5%)됨을 반영하여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40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20억원 감소

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2조의4	-	-40	-40	-40	-	-120

라.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6조의2)

-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 - 적용기한: (현행) '24.12.31. → (개정안) '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'24년 잠정치 317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적용,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24년 전망치 적용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317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951억원 감소
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6조의2	-	-317	-317	-317	-	-951

마.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6조의3)

-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* 적용기한 3년 연장
 - *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(5분의1, 5회) 가능
 - 적용기한: (현행) '24.12.31. → (개정안) '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'24년 잠정치 8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대상이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,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24년 전망치 적용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8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24억원 감소
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6조의3	-	-8	-8	-8	-	-24

바.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6조의4)

-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* 적용기한 3년 연장
 - * 3년간 5억원 이하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,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
 - 적용기한: (현행) '24.12.31. → (개정안) '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'24년 잠정치 0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24년 전망치 적용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0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0억원 감소

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6조의4	-	-0	-0	-0	-	-0

사.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9조제1항)

-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·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
 - (공제율) 15% → 10%
 - (적용기한) 2024.12.31. → 20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전망액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연평균 증가율 만큼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은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전망액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 조정은 2025년 전망액을 바탕으로 현행과 개정안의 세액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117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404억원 감소

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9조제1항	-	-117	-134	-153	-	-404

아.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9조제2항)

-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성과공유제를 통해 지급받은 경영성과급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 50% 상당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
- (적용기한) 2024.12.31. → 20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5년 전망액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연평균 증가율 만큼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5년 전망액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52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62억원 감소

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9조제2항	-	-52	-54	-57	-	-162

자.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,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24조)

-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 -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- R&D 설비투자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
 - (현행) 일반 및 신성장·원천기술 3%, 국가전략기술 4% → (개정안) 10%
-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3~5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세액공제에 기반이 되는 투자는 NABO 명목 시설투자 전망(2024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-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시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제
-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시 점감구조의 도입에 대한 세수효과는 향후 중견기업의 기술별 R&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전망치에 통계청의 2022년 기준 「기업통계등록부」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8,481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2조 8,554억원 감소
 - 2029년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증가분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

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,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24조	-	-8,481	-8,905	-9,297	-1,871	-28,554

차.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요건 완화 및 소득세 감면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29조의6제1항)

-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 경과 후 수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
 - 감면요건: 성과보상기금에 5년(만기) 이상 가입 → 3년 이상 가입
 - 적용기한 : (현행) '24.12.31. → (개정안) '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3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, 공제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제도 시행 4년 후 세액감면액 발생
 - 2026~2027년의 세액감면 효과는 2030~2031년 발생하므로, 추계기간에 미포함
- 공제사업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일채움공제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계
- 2023년의 조세지출액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조세지출액 추정 후, 2024년 이후에는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9년 37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37억원 감소

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요건 완화 및 소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29조의6제1항	-	-	-	-	-37	-37

차. 수도권 내로 공장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제외 및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요건 합리화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63조)

- 수도권 내(인구감소지역 제외)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감면대상에
서 제외하고 이전기업의 업종요건 등 감면요건을 합리화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으로 복귀한 기업의 비
중과 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공장이전하는 비중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
로 가정
 - 최근 3년 평균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수의 비중: 수도권 22.5%, 비수도권 77.5%
- 최근 3년(2022~2024년) 평균 소득세, 법인세 감면실적(1,092억원)을 연
간액으로 환산한 후 수도권으로 복귀한 기업의 비중(22.5%)을 반영한 금
액만큼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
 -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3년 평균 감면실적: (소득세) 236억원, (법인세) 856억원
 -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7년(5년 100% 감면, 2년 50% 감면)간 공장
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41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64억원 증가

수도권 내로 공장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제외 및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요건 합리화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63조	-	41	41	41	41	164

타.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

□ 재정수반요인 개정내용(안 제86조의3제1항)

-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, 공제적용 대상자의 소득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대표자로 확대
 - － 공제한도 확대: 사업(근로)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현행 500만원 → 개정안 600만원, 사업(근로)소득금액 4천만원~1억원 현행 300만원 → 개정안 400만원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현행 사업(근로)소득 규모별 1인당 노란우산공제 평균 공제액이 개정안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만큼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 추정
 - －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구한 세수효과가 유지된다 가정
- 현행 사업(근로)소득 규모별 1인당 노란우산공제 평균 공제액에 각 구간별 공제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 공제액을 추정한 후, 양자의 차이에 실효세율 및 2022년 귀속기준 노란우산공제 신청인원수(근소, 종소 각각)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146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585억원 감소

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86조의3제1항	-	-146	-146	-146	-146	-585

과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

□ 재정수반요인(안 제91조의18)

- (일반투자형ISA) 납입한도 1억원(연2천만원) → 2억원(연4천만원),
비과세한도 200 → 500만원(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 → 1천만원)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비과세 확대 효과는 최근 ISA납입금액·소득세액 실적을 활용하고, 납입한도 상향효과는 한도 상향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전제
- 2021~2022년 평균 ‘비과세 전환 대상 구간 소득세액×납입한도 상향(2배)’로 산출하되, 최근 납입금액 증가 수준을 반영해 조정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100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500억원 감소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91조의18	-100	-100	-100	-100	-100	-500

하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91조의20제1항)

-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
 - 적용기한 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5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조세지출예산서의 2024년 전망치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24년 전망치 적용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14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4억원 감소
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91조의20제1항	-	-14	-	-	-	-14

거. 결혼세액공제 신설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92조 신설)

- 2024.1.1.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생애 한 번만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(부부 1인당 50만원)를 3년간(2024~2026년) 한시 적용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혼인신고자 중 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22년 기준 성별·연령별 확정인구대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(중복자 제외) 신고자 비율을 따른다고 전제
- 최근 3년 평균 혼인건수가 향후 5년간 유지된다 가정
- 소득세 신고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22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의 성별·연령별 자료를 따른다고 전제
- 최근 3년 평균 성별·연령별 혼인건수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자수를 추정하고 면세자를 제외한 후, 이들 각각이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827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2,481억원 감소

결혼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92조	-827	-827	-827	-	-	-2,481

너.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96조의3)

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 - 현행 2024년 12월 31일 → 개정안 2025년 12월 31일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-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라 예상 감면액 추정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545억원 감소

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96조의3	-	-545	-	-	-	-545

다.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97조의9제1항)

-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%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(2024.12.31. → 2027.12.31.)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최근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지출액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제
- 2022~2023년 조세지출 실적의 연평균을 반영해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11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32억원 감소

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97조의9제1항	-11	-11	-11	-	-	-32

러.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0조의3제1항, 제100조의5제1항)

-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3,800만원에서 4,400만원으로 인상

근로장려세제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

가구 유형	현행	개정안
단독가구	2,200만원	2,200만원
홀벌이가구	3,200만원	3,200만원
맞벌이가구	3,800만원	4,400만원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- 제15차년도 재정패널조사자료(2023년)의 소득 및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가구 유형별 수급대상자 수와 지급액 변화분을 추정하여 추계
 - 2029년까지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연간 자연감소분(가구탈락률 -1.3%)¹⁾을 반영하여 지급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773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3,765억원 감소

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0조의3제1항, 안 제100조의5제1항	-773	-763	-753	-743	-733	-3,765

1) 제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명목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가구의 비율

며.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재설계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4조의10)

-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5년 연장
 -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- 기준선박이 아닌 리스 선박 등(이하 '기준선박외')에 대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 30% 인상
 - 과세표준 = $\Sigma(\text{개별선박 순톤수} \times \text{톤당 1운항일 이익} \times \text{운항일수} \times \text{사용률})$
 - (현행) 기준선박 여부에 관계없이 톤당 4~14원 → (개정안) 기준선박 동일, 기준선박외 톤당 5.2~18.2원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향후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는 최근 10년(2014~2023년)간 감면액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- 기준선박외의 톤당 1운항일 이익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는 한국해운협회에서 제공받은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외의 톤수 비중을 이용하여 기준선박외의 감면액을 추정한 후, 과세표준 증가율 및 법인세 실효세율 등을 반영하여 추계
 - 법인의 가결산 방식을 통한 중간예납 산출 비중을 반영하여 2025년 세수효과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498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2조 5,710억원 감소

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재설계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4조의10	-498	-6,303	-6,303	-6,303	-6,303	-25,710

버.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4조의11)

-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(2024.12.31.→2027.12.31.)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2023년 조세지출 실적과 2024년 조세지출 잠정치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3년 감면실적과 2024년 감면 잠정치의 평균(112억원)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감면 규모: 2023년 84억원, 2024년 140억원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112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336억원 감소

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4조의11	-	-112	-112	-112	-	-336

서.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4조의24)

-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(2024.12.31.→2027.12.31.)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2024년 조세지출 잠정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향후 국내복귀 기업은 모두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하고, 국내 복귀한 해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복귀 후 10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현행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은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가 적용
-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4년 감면액 잠정치(59억원)를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7년(5년 100% 감면, 2년 50% 감면)간 국내 복귀기업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²⁾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10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98억원 감소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4조의24	-	-10	-20	-30	-39	-98

2) 2023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 기업에 대한 감면율(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) 상향 조정은 2024년 국내복귀기업부터 적용되어 2025년 이후 감면실적에 반영

어.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4조의26)

-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 -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향후 동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최근 3년(2022~2024년)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동 제도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실적은 1억원 수준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1억원 감소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3억원 감소

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4조의26	-	-1	-1	-1	-	-3

저.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6조의11, 제108조의3)

-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최근 5년 간 면세점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 체납액 비율 자료, 매출액 대비 송객수수료 추정비율(기획재정부 제공자료) 등을 활용하되, 최근 추세가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- 최근 ‘면세점 매출액 평균×면세점 매출액 대비 송객수수료 추정비율×부가가치세율×부가가치세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체납액 평균 비율’로 추정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81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,378억원 증가

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6의11, 안 제108의3	81	324	324	324	324	1,378

주: 지방소비세(25.3%)를 제외한 금액임

처.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7조의2)

-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범위 확대
 - 2025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현행 호텔업에서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확대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- 과거 조세지출 규모, 관광호텔업 대비 휴양콘도미니엄업 매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연간 세수효과 추정
 - 2025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점 감안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11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6억원 감소

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7조의2	-11	-5	-	-	-	-16

주: 지방소비세(25.3%)를 포함한 금액임

커.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조정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09조)

-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30만원 축소(100만원→70만원)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2025년 이후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최근 10년간(2014~2023년) 자동차 내수판매실적 평균 변화율(1.4%)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-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감면규모는 감면한도액과 같다고 가정
-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축소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분까지 산출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2023년 감면실적(2,108억원)에 30%를 곱하여 2023년 기준 감면한도액 축소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
- 2023년 기준 세수효과에 2023년 대비 2024년 및 2025년 이후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등록대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제도 유지기간 동안 세수효과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833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5,417억원 증가

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9조	833	1,122	1,138	1,154	1,170	5,417

주: 지방소비세(25.3%)를 제외한 금액임

터.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18조의2)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
 -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향후 동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최근 2년(2023~2024년)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동 제도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은 5.7억원 수준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6억원 감소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7억원 감소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04조의24	-6	-6	-6	-	-	-17

퍼. 창업중소기업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27조)

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안의 탄력고용지원에 대한 중복배제 도입
 - 기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분에 대한 중복배제를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으로 계속고용 및 탄력고용지원에 대한 중복배제로 확대
 -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지원에 대한 중복배제 신설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전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기업 중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개인 및 법인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개인 및 법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추정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277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,108억원 증가

창업중소기업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27조	-	277	277	277	277	1,108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	김효경	
	신흥철	
	박지원	
	이정훈	
	박성은	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	최천규	
	박정환	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
신흥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
장설희	02-6788-4835	shjang@assembly.go.kr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